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 (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2월 9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운희 농정국장)

가. 제안이유

-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의 이율 인하 및 기금운용 방안 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인에게 기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어촌개발기금 용어 정비(안 제2조)
 - 종료된 사업(지역명품)의 용어 및 내용 삭제
- 농어촌개발기금 사업 지원 범위 확대(안 제5조)
 - 제1호 내용 중 농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에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추가
- 융자금 이자 이율 인하(안 제8조)
 - 융자금 이자 : 1.5% ⇨ 1.0%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나기성)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의 이율 인하 및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에게 기금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제2조 제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로, 안 제2조제5호의 용어를 삭제함에 따라 그 내용인 제5조제4호를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동 조례의 개정 에 따라 융자금 이자가 연 1.5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낮아질 경우 기금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12. 9, 김인수 의원

○ 수정이유

- 조례안 중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의 제목을 수정함은 물론 제2조제5호의 삭제에 따라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수정 주요내용

-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 제5조제1호 중 “소득개발” 을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개정되는 조례안 중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제2조제5호의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도 함께 삭제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 제5조제1호 중 “소득개발” 을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소득개발” 을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제2조(<u>정의</u>) ----- ----- ---
제5조(사업지원) ----- ----- -----.	제5조(사업지원) ----- ----- -----.	제5조(사업지원) ----- ----- -----.
1. ~ 3. (생 략) 4. 지역명품의 육 성을 위한 사업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명품의 육 성을 위한 사업</u>	1. ~ 3. (현행과 같음) 4. (<u>삭 제</u>)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소득개발”을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시설자금은”을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융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은 연 1퍼센트로 하며”를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융자 지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상한기일이 도래된 때부터는 연 1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다.

1.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차세대
농업인, 귀농인은 1억원 이내
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
는 5억원 이내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생략)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
로 하되, 차세대농업인 및 귀
농인은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
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
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 (생략)

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
금은-----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로 하며 -----

-----.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

□ **추진근거**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 시행지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 저장, 유통, 가공, 기반조성 등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구입
- 지원기준 : 융자 80%, 자담 20%
- 지원조건

자금유형	지원한도액	기간	이율(연)
시설자금	개인 : 1억원 이내 단체 : 5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상환	1.5% 단,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1%
운영자금	일반 : 5천만원 이내 유통 : 10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 연1.5% → 취급수수료 0.6%, 대여이자 0.9%, ※ 연1.0% → 취급수수료 0.5%, 대여이자 0.5%

※ 귀농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차세대 :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자 또는 만32세이하인자로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기금 조성 현황

○ 조성액 : 39,236백만원 ('14. 12. 04. 기준)

- 채권액 : 33,519백만원, 예치액 : 5,717백만원

○ 재 원 : 용자금의 상환 및 운용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 근거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연도별 조성액 : '93 ~ ' 14년>

(단위:억 원)

연도별	합계	'93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392	170	49	7	15	15	23	42	20	8	8	6	5	4	4	4	4	4	4
전입금	310	165	46	3	11	11	18	36	14	3	3	-	-	-	-	-	-	-	-
이자등	82	5	3	4	4	4	5	6	6	5	5	6	5	4	4	4	4	4	4

□ 농가 대출 실적

(단위:백만원)

연도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11.
예산액	14,067	16,166	10,457	15,807	13,548	15,755	16,183	14,858	13,439	15,203
농가신청	12,590	13,908	15,681	14,640	10,638	14,255	14,473	11,178	8,112	9,885
농가대출	5,199	6,395	8,860	8,204	5,103	7,419	9,830	8,418	5,596	3,891
예산액대비 농가신청율	89.5	86.0	150.0	92.6	78.5	90.5	89.4	75.2	60.4	65.0
농가신청대비 농가대출율	41.3	46.0	56.5	56.0	48.0	52.0	67.9	75.3	69.0	39.4
예산액대비 농가대출율	37.0	39.6	84.7	51.9	37.7	47.1	60.7	56.7	41.6	25.6